

문서번호 대의협 제0674 - 12617호

시행일자 2025. 2. 20.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482호(2021.6.1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8호(2023.11.21.)

3.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7월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보건복지부 지정)된 이래로 의료인들의 환자안전 인식 제고와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화 조성을 위해 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금년도에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재발방지에 힘쓰며, 의료 질 향상 및 대국민 신뢰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기간 : 2025.1.1.~2025.12.31.

5.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에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사고 보고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동 내용을 함께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 환자안전사고 외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경유한 환자의 환자안전사고 포함

가. 환자안전사고 보고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b>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b> 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b>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b> 해야 함(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나.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택1)

- (이메일) rlaqhal0309@naver.com
- (팩스) 02-793-8702
- (홈페이지) 의협 홈페이지(<http://www.kma.org> > 지역환자안전센터 탭 > 환자안전사고 보고 > 보고하기 클릭)

다. 보고양식 :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붙임#2 참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정보센터 > KMA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담당자 : 김보미)

[전화 : 02-6350-6606, 이메일 : rlaqhal0309@naver.com]

※ 붙임

1. 2025년도 지역환자안전센터 사업 추진계획 1부.
2. 환자안전사고 보고서(서식) 1부. 끝.

대한의사협회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 각시도의사회장, 대한의학회장(26개 전문과목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